

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6 (금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7. 11. 26 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7. 12. 04 (화) 제14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: 김장래)

- 가.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역은 토지매입 2건, 건물 신·증축 2건 등 취득 4건(73,199㎡/1,670,848천원) 이고, 처분은 없음.
- 나. 토지 취득 2건(35필지 72,269㎡ 470,848천원)
 -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 3필지 2,441㎡ 77,904천원
(주민생활지원과)
 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 32필지 69,828㎡ 392,944천원
(환경과)
- 다. 건물 신·증축 2건(2동 1,200,000천원)
 - 대화면분회경로당 신축 1동 500,000천원(주민생활지원과)
 - 본청 창고 증축 1동 700,000천원 등(재무과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,

- 취득은 4건 / 73,199㎡ / 1,670,848천원이고,
- 처분은 없음.

나. 세부적으로 보면,

- 토지취득은 2건 35필지 72,269㎡ 470,848천원으로
 - “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”은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건립요청에 따라 하진부리 353-7번지와 2필지 2,441㎡를 매입하여 안치실, 분향실,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“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”은 미탄면 창3리 1010번지 일대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사업장 주변 500m이내의 거주자를 환경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려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회동리 894번지와 31필지 69,828㎡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.
- 건물 신·증축은 2건(2동 / 1,200,000천원)으로
 - “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”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유효자원으로서 가치제고를 위하여 군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대화리 1008-3번지상에 지상2층 연면적 330㎡의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,
 - “본청 서고 및 창고 증축”은 늘어나는 문서 및 물품량으로 기존의 문서 및 물품보관장소에서의 보관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평창읍 하리 210-2번지(군청사 내) 상에 지상3층

연면적 600㎡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

-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,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 및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등 3건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, 또한 향후 예측되는 민원에 대한 근원적인 대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며, 본청 서고 및 창고 증축건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으로 우리군이 지향하는 복지와 행정의 효율성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단, 수해복구 및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신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원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장례식장 예정지 인근부지의 매입 필요성은?	○ 인근부지는 국유지이거나 집단화 사업으로 매입완료 하였음.
○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매입 관련 매입부지 활용방안은?	○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하거나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계획
○ 대화면 분회 경로당 사업비 활용계획은?	○ 부지매입비 2억원, 건축비 5억 원으로 활용계획
○ 본청 창고 증축 위치는?	○ 현 군청사 부지내 창고 및 기사대기실 철거 후 증축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진부면장례식장 부지매입시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징구 후 사업추진 바람.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. 끝.

붙임)

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11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.

2. 주요 내용

가.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역은 토지매입 2건, 건물 신. 증축 2건 등 취득 4건, 73,199㎡, 1,670,848천원이고, 처분은 없음.

나. 토지 취득 2건은

-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 3필지 2,441㎡ 77,904천원
(주민생활지원과)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 32필지 69,828㎡ 392,944천원 등
(환경과) 2건 35필지 72,269㎡ 470,848천원이고

다. 건물 신.증축 2건은

- 대화면분회 경로당 신축 1동 500,000천원(주민생활지원과)
- 본청 창고 증축 1동 700,000천원 등(재무과)
2동 1,200,000천원임.

3. 관계법령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
《관계법령 발취》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

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『지방세법』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.

2. 토지에 있어서 시·군·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, 처분은 1건당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재산